

예산총칙

2008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5,227,207	12,756,816
일반회계		319,198,288	9,575,949
특별회계		106,028,919	3,180,868
기타특별 회계		106,028,919	3,180,868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98,559	32,95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467,538	44,026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39,961	10,199
주택사업특별회계		79,411	2,38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9,268,635	2,378,059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49,211	16,476
치수사업특별회계		978,799	29,35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35,415	19,062
기반시설특별회계		111,911	3,357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21,499,479	644,98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569,03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